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신설>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8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신설 ...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 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3호 각 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신설

☐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illegible]

○ 그 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직후보자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능력 및 자질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없어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²⁾에 필요한 자료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완화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개인의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3자로부터 그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인사청문 관련 정보도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를 얻어 거래정보등을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직후보자 본인 외의 자의 거래정보등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회가 인사청문을 위해 거래정보등을 제

2)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의 범위는 【참고자료】 참조

공 받음으로써 얻는 공익과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우려가 있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참고자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인사청문회법」 제2조)

근거 법규	「국회법」 제46조의3	「국회법」 제65조의2
실시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	국회동의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관 · 국무총리후보자(대통령당선인 요청)	대통령 임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 한국방송공사 사장 · 국무위원후보자(대통령당선인 요청)
	국회선출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법원장 지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